비조치의견서 (□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		100	\		_	' /
	담당 부서	IT검사국		안기복 선임검사역	연락처	02-3145-7429
요청대상 행위	□ 금융회사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 등을 제3자 제공*하고, 제3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자신의 업무 목적을 위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, * 신용정보법,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계법령상의 '제공'에 해당 ○ 해당 금융회사가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서비스 이용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					
판단	□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		
판단이유	 □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은 금융회사의 '정보처리 업무 위탁'시 적용되며(금융위원회 법령해석 190152), ○ '정보처리의 위탁'*이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 * 「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」제2조제6항 □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시점부터 해당 정보의 지배관리권 및 책임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, 제3자가 해당 정보를 귀사가 아닌 제3자의 업무 목적을 위하여 처리하는 점 등에 비추면, ○ 귀사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4조의2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 					
		청대상행위에 대한 및 별 의견에 대한 인정			,	서에 기재된 신청인의

- ※ **비조치의견서의 효력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 항·제2항 참조)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
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 치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 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